

제30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
제1차 본회의, 2024.08.27.(화) 10:00

「고령 군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안에 대한 의견청취」
검 토 보 고 서



전 문 위 원

「고령 군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한 의견청취」 검 토 보 고

1. 제 안 자 : 고령군수

2. 제안이유

「고령 군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(안)」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규정에 따라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위 치 : 고령군 행정구역 전역

나. 면 적 : 384.048km²

다. 시간적 범위 : 기준년도 2020년, 목표년도 : 2030년

라. 계획의 내용

- 용도지역·지구 결정(변경)에 관한 계획
- 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
-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

마. 청취대상 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7항)

- 용도지역·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
- 도로 중 주간선도로
- 공원(소공원 및 어린이공원 제외)
- 학교 중 대학
- 공공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
- 폐기물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

4. 관계법령

○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제7항 .

5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「군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(안)」에 대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.
- 금번 「고령 군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(안)」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방향 모색 및 관련법 개정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,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건전한 도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
- 가야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 대가야읍 도시지역의 여건변화를 반영한 군관리계획(재정비)을 수립함으로써 도시기능을 강화하고,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 등을 통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,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.
- 또한,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지역 중 보존가치가 낮은 자투리 토지의 경우 주변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사유재산권을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며,

도로, 공공청사 등 군계획시설 개설현황을 반영하고,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군계획시설을 체계적이고, 합리적으로 관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

- 다만, 금회 계획(안)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며, 상위계획 및 관련법의 위배가 되지 않는 선에서 주민불편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.
-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【관련 법령】

[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]

제28조(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) ① 국토교통부장관(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·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,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·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(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)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1. 4. 14., 2013. 3. 23.>

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시·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의 의견 청취 기한을 밝혀 도시·군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4. 14., 2013. 3. 23.>

③ 제2항에 따라 도시·군관리계획안을 받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까지 그 도시·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4. 14., 2013. 3. 23.>

④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·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<신설 2021. 1. 12.>

1. 제1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 의견을 도시·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

2. 제30조제1항·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, 시·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·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·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

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21. 1. 12.>

⑥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·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<개정 2011. 4. 14., 2013. 3. 23., 2021. 1. 12.>

- ⑦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주민”은 “지방의회”로 본다. <개정 2013. 3. 23., 2021. 1. 12.>
- ⑧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가 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·군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지방의회는 명시된 기한까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4. 14., 2021. 1. 12.>

[전문개정 2009. 2. 6.]